

보도자료

2011년 12월 26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 (750-2630)
시장조사과 장성휘 사무관 (750-2641) zoo@kcc.go.kr

“방통위, 올림픽·월드컵 등 중계방송권 분쟁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세부기준 만들어 시행”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
내년 1월 시행에 따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부터 적용될 듯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등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12월 26일 심의·의결하여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07년의 방송법 개정과 ‘08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은 되어 있었으나, 금지행위 관련 구체적 판별기준이 미흡하여 그간 국회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금지행위의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0년말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하여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11.10월)와 '규제개혁위원회'('11.12월)의 심의 등을 거쳐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에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금지행위 유형인 ① 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가구수의 75/100이상, 올림픽·월드컵은 90/100이상), ② 실시간 방송 실시, ③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지연 금지, ④ 경기 자료화면의 무료제공 등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 붙임 1참조>

이번에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관련 구체적 판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용이해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준수 및 법령 해석·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를 통하여 방송의 공공성 유지 및 시청자 편익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당장 내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런던 올림픽'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붙임 1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방송수단 확보)**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자가 또는 임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에 관하여 규정(제2조)
- **(실시간 방송)** 중계방송권자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제3조)
 - 재난방송,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적인 송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실시간 방송 필요성이 감소하여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지연 금지)** 중계방송권 판매·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예외적인 면책사유도 규정(제4조)
 - 구매자측 제시가격·조건 등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구매자의 시설·인력 문제에 따른 방송 송출 불가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인정
- **(자료화면 제공)**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 및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제시(제5조)
 - 올림픽·아시안게임은 1일 최소 4분 이상,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1일 2분(복수경기는 4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
 -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중계방송권 권리표시(5초이상 자막)를 이행하지 않거나 뉴스보도·해설 등 정규로 편성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붙임 2 >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참고자료

1.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국민 관심행사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금지행위를 준수(방송법 제76조의3)토록 규정
- ※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방송법 제2조 제25호)

2.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주요내용

1) 적용 대상행사(방송법 제76조)

- 보편적시청권의 대상인 국민관심행사는 ‘보편적시청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고시로 지정
 - 동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야구WBC,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등

2) 금지행위 내용(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 국민관심행사에 대하여 국민 전체가구수중 고시하는 비율(올림픽 월드컵 : 전체 가구의 90/100, 야구WBC아시안게임축구A매치 : 75/10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를 거부지연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